연구논문

한국과 미국의 상사중재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이 강 빈 **

〈목 차〉

Ⅰ. 서 론
Ⅱ. 한국 및 미국의 중재제도 연혁
Ⅲ. 한국 및 미국의 중재기관
Ⅳ. 한국 및 미국의 상사분쟁해결규칙
Ⅴ. 결 론

* 이 논문은 2001년도 상지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상지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경상대학장

I. 서 론

매년 수백만건의 상거래가 일어나고 있으며, 때때로 이러한 상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분쟁가운데 대부분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있는 결정을 하기 위해 공평한 제3자에게 자발적으로 분쟁 해결을 부탁하는 중재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 중재는 이러한 분쟁들을 사적으로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명되어 왔다.

한편 당사자들이 그들의 분쟁을 중재하기 전에 알선에 부탁하기를 희망할 수 있다. 알선에 있어서 중립적 알선인은 당사자들이 화해에 도달하도록 도와주지만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판정을 내릴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며, 분쟁의 해결은 당사자들 자신에게 달려있다.

분쟁당사자들이 알선, 중재 등 소송대체적 분쟁해결방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을 이용하는 이유는 법원에서의 소송과 비교하여 비용이 보다 저렴하며, 처리가 보다 신속하며, 비밀이 유지되며, 절차가 보다 비공식적이며, 결과가 참가자들간의 관계유지 및 때로는 개선조차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ADR은 많은 산업들에서 그 이용이 점점 일반화 되고 있으며,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의 범위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명백히 이점이 있으며 거의 무제한적으로 되고 있다.

미국에서 지난 10년간 알선, 중재 및 기타 소송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의 이용은 2000년에 미국중재협회에 신청된 기록 경신적인 사건수 198,491건에 의해 증명되는 바와 같이 극적으로 증대하였다. 이러한 사건의 신청은 상업금융, 건설, 노동 및 고용, 환경, 건강보호, 보험,

부동산, 안전 및 기술분쟁을 포함하는 모든 분야의 문제들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알선 및 중재신청 건수가 증대하여, 2001년에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된 알선사건은 446건으로 전년대비 6% 감소하였고, 중재사건은 197건으로 전년대비 13% 증가를 보였다. 이 가운데 특히 건설분야 중재사건이 대폭 증가하여 전체 중재신청 건수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 중재제도가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위와같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분쟁해결을 위해 이용이 증대되고 있는 알선, 조정, 중재 및 기타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하여 특히 양국의 중재기관 및 상사분쟁해결규칙을 중심으로 비교 고찰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ADR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한국 및 미국의 중재제도 연혁

1. 한국의 중재제도 연혁

우리나라에 중재제도가 도입된 것은 1912년 조선민사령 제1조 제13호에 따라 구일본민사소송법이 우리나라에 의용된 때이다. 구일본민사소송법 제8편은 중재수속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는데, 8·15해방 후의 군정법령 제21호에 따라 그 효력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용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1960년 현행 민사소송법 제정시 중

재에 관한 부분이 삭제되었고, 따라서 우리법제상 중재제도가 일시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 후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착수한 이래 무역량이 증가되면서 정부와 상공업계가 중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963년부터 중재법의 제정과 중재기관의 설치에 관한 작업을 시작하여 1965년에 중재법안을 마련하였으며, 1965년 12월31일 국회를 통과하여 1966년 3월16일 공포시행됨으로써 중재제도가 우리 법제상 최초로 인정되게 되었다. 그후 대한상공회의소는 그 산하기구로서 상사중재위원회를 설립하여 상사중재업무를 관할하게 하였고, 1966년 10월13일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 상사중재규칙을 제정하였다.

그 후 상사중재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재기구를 독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아래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상사중재위원회가 해체되고 1970년 3월22일 독립된 사단법인으로 대한상사중재협회가 설립되었으며 1980년 8월29일 그 명칭을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변경하였다.[1]

1973년 2월8일 우리나라가 뉴욕협약[2]에 가입하면서 중재법과 중재실무상의 괴리를 좁히기 위하여 1973년 2월 17일 중재법이 개정되었다. 그 후 1985년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가 모델중재법[3]을 채택한 이래 선진 각국은 모델중재법을 수용하여 중재제도를 정비하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중재법을 가지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 대한상사중재원, 『상사중재 30년사』, 1996, pp.39-41 ; 목영준, 『상사중재론』, 박영사, 2000, pp.12-13 .

2)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1958.

3)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1985.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모델중재법을 수용하여 중재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졌다. 이에 1998년12월 중재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델중재법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우리의 현실에 맞지않는 부분은 과감히 수정한 중재법개정안을 만들어 1999년 12월2일 국회를 통과하여, 1999년 12월31일 공포 시행되었다. 개정 중재법은 중재제도의 국제화 또는 중재법의 국제적 통일화에 우리나라도 동참하여 우리 중재제도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한 것이다.[4] 중재법의 개정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5]도 2000년 4월27일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 개정되었다.

2. 미국의 중재제도 연혁

미국에 있어서 소송대체적 분쟁해결방법(ADR)이 역사적으로 소송보다 오래되었으며, 더욱 더 자주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소송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의 다수가 현재 누리고 있는 정도의 수준을 언제나 누려온 것은 아니다. 19세기말 및 20세기초 많은 법원들은 명백히 보통법 중재를 흔히 사법부 관할의 박탈이라고 기술하면서 그 미치는 범위를 제한하여 왔다.

중재절차에 대하여 공식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한 사법적 저항으로 말미암아 1925년 연방중재법(Federal Arbitration Act)의 통과를 가져왔으며, 그리고 1950년대에 몇개주간에 통일중재법(Uniform Arbitration Act)의 공포를 가져왔다. 이 두개의 법률은 중재합의가 법률상 다른 계약들과 마찬가지로 강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장문철, 『현대 중재법의 이해』, 세창출판사, 2000, p.12.
5)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은 '중재규칙'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0.4.17).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법원 및 입법들은 계속해서 중재인들이 공정한 구제조치를 내리거나, 명백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비용을 전가시키거나, 또는 명백히 징벌적인 손해배상[6]을 포함하는 판정을 내릴 권한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7]

최근에 소송대체적 분쟁해결방법가운데 알선(mediation)이 인지도가 매우 높은 방법이 되어 왔으며,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매우 자주 이용하는 절차가 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on-line)중재제도는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상설중재기관인 미국중재협회(Arbitration Society of America)는 1926년에 비영리기관으로 공공서비스와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오늘날까지 그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1926년 1월에 미국중재협회(Arbitration Society Ameica), 중재재단(Arbitration Foundation) 및 중재회의(Arbitration Conference)가 통합되어 미국중재협회가 되었다.

미국중재협회의 최초 패널(panel)은 480명의 중재인들도 구성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11,000명 이상으로 성장하였으며, 노동, 건설, 에너지, 지적재산권 및 집단클레임과 같은 부문에서 다수의 산업 또는 분쟁 특화적인 패널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미국중재협회는 증가하는 글로벌 상업환경의 각 중요부문에서 분쟁을 취급하는 50가지 이상의 전문화된 규칙과 절차들을 제공하고 있다.[8]

미국중재협회는 알선, 중재, 선거 및 기타 법정외 해결절차를 통해

---

6) Garrity v. Lyle Stuart, Inc., 353 N.E. 2d 793(1976)(denying arbitrator power to award punitive damages even if agreed upon by the parties).

7) Edward A. Daue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Law and Practice, Juris Publishing, 2000, p.2-3.

8) Am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2000 Annual Report,* pp.12-13.

광범위한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미국내에 38개 사무소가 있으며, 39개 국가들의 중재기관들과 54개의 협정을 맺고 있으며 분쟁심리를 위한 법정, 효율적인 사건관리, 검증된 규칙 및 절차 그리고

사건을 심리하여 해결하기 위한 공정한 전문가들의 명부를 제공하고 있다.[9]

Ⅲ. 한국 및 미국의 중재기관

1. 대한상사중재원

(1) 대한상사중재원의 사업실적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신청건수 및 처리건수를 보면, 2000년에 중재신청 175건이던 것이 2001년에는 197건으로 13% 증가하였고, 2000년에 중재처리 145건에서 2001년에는 169건으로 17% 증가하였다. 중재 총처리건수 169건은 판정 137건, 철회 19건, 절차불이행 13건으로 처리되었다. 2001년 중재신청 접수사건을 분야별로 보면, 공적인 기관이 관련된 사건이 전체사건의 29%, 건설계약과 관련된 사건이 전체사건의 29%, 국제사건이 전체사건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M&A사건이 7건, 판매·대리점 계약 관련 사건이 21건으로 대폭 증가 하였다.

2001년 알선처리 건수를 보면 472건으로 전년대비 8% 증가하였으며, 소재불명 등으로 알선이 불가능한 사건 71건을 제외한 401건의

9) Ibid., p.22.

48%인 193건이 알선을 통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 또한 상담건수를 보면 5,284건으로 전년대비 22%증가하였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상담건이 239건으로 전체의 5%를 차지하였다.[10]

(2) ADR제도 확충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 알선이외의 대표적 소송대체적 분쟁해결방법(ADR)의 하나인 조정제도를 2001년부터 시행하여 명실 공히 종합적 ADR 분쟁해결기관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조정제도로서 2가지를 도입하였는데, 첫째 무역분쟁조정제도는 기존의 무역분쟁에 대한 알선외에 조정까지 가능하며, 무역분쟁해결에 오랜 경험이 있는 사무국 직원에 의한 분쟁해결외에 외부전문가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무역분쟁해결 전문가 50인을 후보자로 위촉하고 있다. 둘째, 신뢰성분쟁조정제도는 신뢰성 인증을 받은 부품·소재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해관계자간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조정 대상범위는 부품소재의 수리, 대체, 교체비용 등을 포함한 제조물의 품질관련 분쟁 및 부품이 사용된 완성품의 수리, 대체, 교체비용 등을 포함한 제조물배상책임 관련 분쟁이다. 이 조정제도를 위해 동분야 전문가 35인을 조정인 후보자로 위촉, 신뢰성분쟁조정규칙 제정, 업무편람 제작 등을 하였다[11]

10) 대한상사중재원, "2001년 중재원 사업실적 및 통계", 『중재』, 2002·봄/제303호, pp.4-7.
11) 대한상사중재원, "2001년 중재원 사업실적 및 통계", 전게서, p.6.

2. 미국중재협회

(1) 미국중재협회의 사업개요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 AAA)는 기업의 중역, 변호사, 개인, 무역협회, 노동조합, 경영자, 소비자, 가정, 지역사회 및 정부의 모든 기관들에게 광범위한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뉴욕의 미국중재협회 본부 및 미국전국의 주요 도시들에 위치한 사무소들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분쟁의 심리는 미국중재협회 사무소가 있는 도시들에 한정되지 않고 당사자들에게 편리한 위치에서 개최될 수 있다. 더욱이 미국중재협회는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센터로서 봉사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간행물을 발행하며, 그리고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의 모든 형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중재협회는 매년 6천개 이상의 법인, 단체, 전문회사, 조합, 학술기관, 정부기관 및 개인들로부터 회원자격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러한 회원들에게는 현재의 산업동향, ADR의 창조적 이용, 사건 관리기술, 사건 준비 및 제기 권고, 사업계약조항의 입안제의,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에 초청 등을 계속 통보해 주고 있다. 또한 회원자격의 또다른 이익은 권위있는 논문, 편집자 견해 및 현재의 ADR 개발에 관한 보고를 제공하는 Dispute Resolution Journal 및 ADR Current와 같은 다수의 정기간행물을 구독하는 것이다.[12]

미국중재협회의 국내 및 국제 중재인 및 알선인 명부의 중립적 제3자들은 광범위한 분야와 직업에 걸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산업변호사, 소송변호사, 법인변호사 및 전직 판사들이며, 그들의 산업이나

12)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2000 Annual Report*, p.23.

직업의 지도자들에 의해 미국중재협회 명부에 지명된다. 또한 미국중재협회의 중재인 및 알선인 명부는 지역 또는 산업의 특성을 지닌 패널로 이루어진다.

중립적 중재인 및 알선인의 자격은 ADR절차의 정직함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이며 미국중재협회의 핵심가치이다. 그들의 전문적 산업지식과 경험으로 말미암아 미국중재협회 중립적 제3자들은 흔히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특정산업의 관습과 실무를 잘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립적 제3자의 준비 및 훈련은 미국중재협회가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중요한 분야이다. 중립적 제3자의 행동은 미국중재협회와 미국변호사협회의 공동위원회에서 작성한 상사분쟁 중재인들을 위한 미국중재협회의 윤리규정, 그리고 미국중재협회, 미국변호사협회 및 분쟁해결전문직업인협회에서 개발한 알선인들을 위한 모델행동기준에 의하여 안내되고 있다.[13]

지난 15개월 이상 50,000건의 신청에 관련된 보험집단클레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 미국중재협회에 신청된 사건수는 전년대비 41.6% 증가한 198,491건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2000년에 미국중재협회에서 관리한 알선건수는 전년대비 17.2% 증가한 4,188건으로 증가하였다. 1995년이래 미국중재협회의 연간 신청사건수는 3배이상 증가하였다. 2000년에 증가된 신청사건의 다수는 1999년말에 문을 열은 맨하탄 중심가에 있는 뉴욕무과실조정센터 (New York No-Fault Conciliation Center)의 성공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새로운 센터는 비구속적인 조정을 통해 뉴욕무과실자동차보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사건들을 취급하며, 운영 첫해에 73,352건을 관리하였다.[14]

13) Ibid., p.24.
14) Ibid., p.3.

(2) 미국중재협회의 서비스 내용

(가) ADR시스템 설계

미국중재협회는 지난 10년간의 신청사건들의 현재 목록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초기 단계에서 분쟁 해결을 목표로 했던 분쟁해결대안의 모든 메뉴를 통합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ADR시스템의 설계를 돕기 위하여 회사 및 단체들과 작업을 하였다. 다수의 이러한 프로그램은 모든 당사자들이 대략 수주일내에 만족스럽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사실조사, 민원조사, 동료재심 및 내부알선과 같은 내부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화해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러한 충돌을 위하여 당사자들은 미국중재협회로 향할 수 있으며, 협회의 훈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중립적 제3자들이 알선과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15]

(나) 알선

미국중재협회는 1970년대에 알선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지난 수년간 알선사건 신청이 꾸준한 증가를 보였다. 2000년에는 1999년 보다 17.2% 증가한 4,188건의 알선이 미국중재협회에서 관리되었다. 미국중재협회는 화해에 도달하도록 당사자들과 노력하기 위하여 중요한 경험과 높은 화해율을 지닌 고객이 인증하는 알선인 명부를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중재협회에 신청된 알선사건의 85%가 해결되었다.[16]

15) Ibid., p.24.
16) Ibid., p.25.

(다) 중재

미국중재협회는 그로 하여금 분쟁의 중재를 관리하도록 요구하는 수백만건의 합의서에 기재되고 있다. 미국중재협회의 분쟁해결조항안을 이용함으로써 당사자들은 그들의 상황에 특수한 중재조항을 개발할 수 있다. 중재에서 당사자들은 결정될 논쟁의 범위, 중재인의 자격 및 많은 진행과정의 절차적 면들을 통제할 수 있다. 분쟁이 발생하면 그때에 미국중재협회는 사건을 관리하고 당사자들에게 훈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중재인 명부를 제공한다. 일단 당사자들이 그들 상호간 만족하는 중재인을 선정하면 중재심리가 진행된다. 보통사건은 1일이나 2일의 심리기일에 심리되며, 미국중재협회 상사규칙에 의하여 판정은 심리 종결후 30일내에 내려진다. 사건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기간은 전형적으로 6개월 미만이 걸린다.[17]

(라) 교육 서비스

미국중재협회는 충돌관리 및 분쟁해결 서비스의 국내 주된 제공자로서 연구, 교육 및 훈련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 미국중재협회의 도서관 및 정보센터는 ADR법률 및 실무에 관한 세계 최대의 정보창고이다. 그리고 그의 임무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교육 및 훈련 서비스는 3가지 주요영역, 즉 직원훈련과 개발, 중립적 제3자훈련, 그리고 교육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미국중재협회의 직원을 위한 훈련은 서비스 제공의 일관성을 개선할 목적으로 효과적인 사건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00년에 미국중재협회의 비전과 가치에 초점을 둔 신입 및 장래의 종업원들을 위한

17) Ibid., p.25.

소개비디오를 포함하는 신입직원 예비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착수되었다.

미국중재협회의 중립적 제3자 훈련은 최근 중요한 자원을 투입한 영역의 하나이다. 미국중재협회의 상사중재인 개발 프로그램은 1998년 10월에 착수되었으며, 1999년 10월에 그 종류의 최초 표준화된 프로그램이며 국제중재절차 및 최선의 실무에 초점을 둔 국제중재인 훈련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같은 달에 미국중재협회는 3인 중재패널의 의장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대규모 복합사건 프로그램 패널 구성원들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주최하였다. 또한 미국중재협회의 건설 및 고용 알선인들을 위하여 미국중재협회는 최선의 실무를 분담하고 세련되게 하기 위한 그룹을 소집하였다.

미국중재협회의 교육서비스부는 미국의 최대산업 및 서비스회사, 조합, 정부기관 및 법률회사의 사람들로 하여금 분쟁해결 프로그램의 보다 훌륭한 관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미국중재협회의 교육적인 제공은 작업장내에서 충돌 해결에 관한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법률직원, 인적 자원 관리자 및 종업원들을 위한 회사내 충돌 관리훈련, 알선 및 중재 변호 훈련, 그리고 변호사 및 사법부 구성원들을 위한 훈련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교육프로그램은 전국의 대부분 주요 도시들에서 예정되어 있으며 통신, 적극적 청취, 협상, 알선 및 중재 변호, 그리고 효과적 충돌관리를 포함하는 논제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18]

(마) 선거 서비스

미국중재협회는 노동조합 관리를 위한 투표, 계약 비준 및 대표 국

18) Ibid., p.25.

민투표를 포함하는 200개 이상의 공평한 선거를 해마다 관리하고 있다. 미국중재협회는 최고 수준의 자격, 공정성 및 정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선거과정 전체의 계획, 전략적 관리 및 진행 감독에 책임을 지고있다. 또한 협회의 컴퓨터 스캐닝 기술은 오류없는 즉석 선거결과를 제공하면서 매시간 약 12,000투표용지를 처리하고 계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중재협회의 선거 경험의 대부분이 미국내의 것이었지만, 앞으로 국제적 선거에 서비스 제공을 확장시키도록 계획하고 있다.[19]

(3) 미국중재협회의 ADR 활용 범위

(가) 사업

무수한 국내 및 국제 상사계약에는 분쟁의 알선 및 중재를 규정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은 구매 및 판매협정, 임대, 소유문제, 면허협정, 실행계약, 공동경영, 총판권, 합작투자 및 대부계약, 선적계약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중재협회는 변호사와 직업단체들로 부터의 직접투입과 함께, 회계 및 관련 직업적 서비스, 파산, 상업금융, 컴퓨터, 건설, 고용(비조합), 환경, 건강보호, 보험/재보험, 지적재산, 국제분쟁, 노동불만, 대규모 복합사건, 부동산 및 원격통신을 포함하는 다수의 영역을 위한 패널 및 맞춤 규칙과 절차들을 개발하였다.[20]

(나) 건설

미국중재협회는 30년이상 충돌회피 및 분쟁해결 서비스의 주요 이용자인 건설산업과 함께 대부분 건축계약에서 지정하고 있는 표준 중

19) Ibid., p.26.
20) Ibid., p.26.

재 및 알선규칙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건설산업은 어떤 다른산업 부분보다 더 많이 소송대체적 해결기법을 이용해 왔으며, 또한 입장이 경색되기 전에 분쟁의 요소에 근접한 충돌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수의 다른 비구속적 절차들을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건설산업에서 널리 이용되는 절차인 제휴는 일단 작업이 진행되면 분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 개시전에 모든 당사자들 즉 소유자, 건축가, 계약자, 하청계약자, 기술자 및 사업관리자를 함께 나오도록 한다.

또한 분쟁재심위원회의 이용은 건설산업에서 높게 중시되는 기법이다. 계약이 재정된 후에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소유자와 계약자가 선정하는 3인의 건설패널로 구성되는 분쟁재심위원회는 문제를 관찰하고 작업장에서 즉시 해결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다. 이와같은 '실시간' (real time) 분쟁해결절차는 규칙적으로 작업장을 방문하고 사업진행에 관하여 통보받는 현지 전문가들로 하여금 적대적 태도가 점점 심해지고 경색되기 전에 신속하게 해결을 권고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미국중재협회는 산업지도자들과 함께, 건설장소에 기초를 둔 분쟁 회피의 메뉴를 제공하는 미국중재협회 프로젝트해결(AAA Project Solutions)로 부르는 새로운 서비스와 특수 건설산업의 필요에 맞게 적용시킬수 있는 해결제도에 관하여 작업을 하고 있다.[21]

(다) 소비자

미국중재협회는 매년 상대적으로 적은 소비자 문제들을 해결해오고 있다. 그 대신에, 소비자 영역에서 미국중재협회의 노력의 대부분은 소비자를 위한 수평 운동장을 보장하기 위한 공정성의 기준을 세우는

21) Ibid., p.27.

데 소비하였다. 1997년에 미국중재협회는 오늘날 공정하고 형평한 소비자중재 프로그램을 위한 모델로서 알려져 있는 소비자적정절차 의정서(Consumer Due Process Protocol)를 개발하기 위해 선도적인 소비자 변호인, 법인 변호사 및 분쟁해결 전문가들의 그룹을 소집하였다.[22]

(라) 고용

적정절차 보호수단들은 고용ADR 프로그램의 성공에 중요하며, 이들은 고용계약의 위반, 부당한 종료, 성적 희롱 및 차별을 포함하는 모든 분쟁의 해결에 있어 종업원과 고용주 모두를 위해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작업장 충돌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세계 500명 이상의 고용주들과 500만명 이상의 종업원들이 미국중재협회에 의존하고 있다. 고용분쟁 해결을 위한 미국중재협회의 국내규칙 그리고 고용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알선 및 중재를 위한 적정절차 의정서는 작업장에서의 분쟁 해결을 위한 표준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을 심리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중재협회는 중요한 고용법률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미국중재협회의 고용 중재인 훈련필수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성별 및 인종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국가패널을 제공하고 있다.[23]

(마) 연방기관

지난 10년간 미국연방의 성(省) 및 기관에 의한 ADR의 이용에 대한 입법 및 행정부의 태도에 주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의 현저하게 나타난 성공으로 말미암아, 연방부문은 소송에 대안으로 ADR을

22) Ibid., p.27.
23) Ibid., p.28.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전에는 연방부문이 분쟁 해결을 위하여 구속력있는 중재의 이용을 허용하지 않았던 반면에, 1996년에 행정분쟁해결법의 제정으로 연방기관 및 성들에게 ADR절차의 이용을 영구히 인정하였다.

현재 40개의 이상의 기관들이 ADR의 형식을 이용하고 있다. 가장 큰 불만의 원천인 우편서비스는 종업원 불만이 알선을 제공하기 시작했던 3개 지역에서 77%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조달본부(GSA)도 미국 정부기관 작업장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허가된 고용 알선인들의 출처로서 미국중재협회를 일반조달본부의 공급처 목록에 포함시켰다. 고용 변호사들이 대다수인 미국중재협회의 경험이 풍부한 알선인 패널은 연방의 모든 성 및 기관, 그리고 행정, 입법 및 사법부서들에서의 작업장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 부탁될 수 있다. 또한 미국중재협회는 미국 공군에게 모든 범위의 ADR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정된 4개 단체가운데 하나로 되어있다.[24]

(바) 건강보호

건강보호단체와 그들의 등록인들을 관리하는 건강보호 제공자들은 알선 또는 중재에 의한 해결이 가장 시간과 비용 효과적인 대안이 되는 분쟁에 점점 더 관여되고 있다. 건강보호 분쟁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형평한 표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1997년에 미국중재협회는 미국변호사협회 및 미국의사협회와 협력하여 건강보호특수적정절차 의정서를 개발하였다. 2000년초에 미국중재협회는 그의 건강보호 프로젝트팀 회원들과 작업을 하면서, 하버드의과대학의 지속적 교육부 및 마사츄셀스 종합병원과 협력하여 의사들을 위한 3일간 알선훈련 프로그램을

24) Ibid., p.28.

후원하였다. 분쟁해결기법에 관한 의사들의 훈련은 미국중재협회의 국가건강보호패널에 독립적 제3자를 보충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단계가 되고 있다.[25]

(사) 보험

보험산업은 ADR을 가장 자주 이용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이며, 보험클레임 분쟁은 미국중재협회의 1년간 사건취급가운데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다. 이러한 형태의 클레임들은 전형적으로 몇가지 보험영역 즉, 생명, 건강 및 불구, 재산 및 재해, 제품 및 직업적 책임, 무과실 자동차, 재보험, 근로자 보상, 환경적 책임, 건설, 자격보험, 가옥소유자 보험 및 무보험 자동차 운전자로 분류되고 있다. 미국중재협회는 미네소타주, 뉴저지주 및 뉴욕주의 무과실 자동차 분쟁의 지정관리자이다.

특수화된 분쟁해결의 요구를 다루기 위한 미국중재협회의 전진적인 노력의 일부로서, 미국중재협회는 중재 요구가 생기기 조차 이전에 조정(conciliation)을 통해 뉴욕 무과실 보험분쟁의 해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1999년에 뉴욕 무과실조정센터를 설립하였다. 조정은 분쟁당사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분쟁을 상호 수락할 수 있는 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중립적 촉진자인 조정인의 조력을 받아 함께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절차이다. 조정인의 역할은 당사자 자신들에게 놓여진 분쟁을 권고적이고 비구속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26]

25) Ibid., p.29.
26) Ibid., p.29.

(아) 국제적 관계

사적 분쟁해결의 모든 형식에 높아진 관심은 국제상거래를 통하여 퍼지고 있다. 국제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알선 및 중재조항을 그들의 국제계약에 삽입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다. 즉 당사자들은 분쟁이 중재될 경우 절차에 적용할 규칙, 중재인의 수 및 그들의 결정방법, 중재인의 국적 및 자격, 그리고 중재예정표를 사전에 결정할 수 있다.

최신의 규칙, 국제중재인 및 알선인 패널, 그리고 많은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변호사의 간부를 가지고 있는 미국중재협회의 국제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Dispute Resolution)는 당사자들간의 문화적·법적 차이에 더욱 큰 민감성을 보증하고 있다. 뉴욕에 본거를 둔 국제분쟁해결센터에 신청사건은 계속해서 꾸준한 성장을 하였으며, 2000년에 신청사건은 1999년에 신청된 사건 453건에 비해 510건으로 증가하였다. 제기된 클레임의 범위는 통신 및 제약으로부터 법인 및 공익사업에 까지 매우 다양하다.[27]

(자) 노동-경영

매년 노동자와 경영자는 수천개의 단체교섭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노동자 및 경영자 사회와 미국중재협회와의 관계는 일찍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그리고 사실상 모든 단체교섭 협약은 따로 해결될 수 없는 불만의 중재를 위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중재신청된 분쟁들은 징계, 해고, 좌천, 승진, 생산성, 연금 및 기타 이익과 같은 영역의 문제들에 관련되고 있다. 21세기에 노동자와 경영자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재 및 알선 문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미국중재협회는 1999년에 미국

27) Ibid., p.29.

중재협회의 규칙 및 절차에 관한 가치있는 피드백,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리고 노동자 및 경영자 사회와의 노력을 펴나가기 위하여 전국 노동자 및 경영자 알선 및 중재 프로젝트 팀을 설립하였다.[28]

(차) 집단클레임

지난 수십년간 집단클레임의 출현 및 증대는 국가의 민사재판제도, 법률직업의 회원들 및 미국사회에 계속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점점 더 판사 및 변호사들은 복잡한 분쟁 특히 집단소송 및 집단클레임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대체적 분쟁해결 기법의 이용을 선택하고 있다.

미국중재협회는 파산 및 회사재편성, 고용 및 차별의 기타 형태, 보험, 집단 불법행위를 포함하는 다수 영역에서 집단클레임을 해결하는 오래되고 인상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 각각의 집단클레임 또는 집단소송은 독특한 것이므로, 미국중재협회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들 즉, 집단클레임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주문에 따라 만들어질 수 있는 전국 또는 주 단위에 실시되는 통일규칙, 경험이 풍부한 전문 명인, 초기의 중립적 평가인, 알선인 및 중재인, 분쟁내용에 독특한 훈련 프로그램 및 자료, 특수한 사건취급에 전념하는 경험이 풍부한 사건 관리자 및 감독자, 그리고 사건통계, 판정결과 및 재정회계를 포함하는 정기적 보고서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29]

28) Ibid., p.30.
29) Ibid., p.30.

3. 한국과 미국의 중재기관 비교

설립된지 7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중재협회와 3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상사중재원을 위에서 기술한 미국중재협회의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재 및 알선 신청건수에 있어서, 미국중재협회는 2000년에 총198,491건(중재 194, 303건, 알선 4,188건)이 신청된 반면, 대한상사중재원은 2001년에 총643건(중재 197건, 알선446건)이 신청되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중재협회는 중재 신청건수가 알선 신청보다 훨씬 많은데 비해 대한상사중재원은 알선 신청건수가 중재 신청보다 더 많은 점에 차이가 있다.

둘째, 중재 및 알선 신청사건의 종류에 있어서, 미국중재협회는 무과실 자동차 보험사건이 2000년에 총73,352건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상사, 건설 및 국제사건 등이 증가를 보이고 있는 반면, 대한상사중재원은 매매계약 사건이 2001년에 총336건(중재 66건, 알선 2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밖에 건설계약 사건이 총71건(중재 57건, 알선 14건)으로 대폭 증가를 보이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

셋째, 제공서비스에 있어서 미국중재협회는 ADR시스템 설계, 알선, 중재, 교육 및 훈련, 선거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대한상사중재원은 상담, 알선, 중재, 조사연구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중재협회는 해마다 200개 이상의 공평한 선거를 관리하고 있으며, 선거과정 전체의 계획, 전략적 관리 및 진행 감독에 책임을 지고 있는 점이 대한상사중재원이 실시하는 사업과 다르다.

넷째, ADR의 활용범위에 있어서 미국중재협회는 상사분야 이외에 건설, 소비자, 고용, 연방기관, 건강보호, 보험, 국제적 분쟁, 노동-경영, 집단클레임 등 모든 분야의 분쟁 해결에 ADR을 이용하고 있는 반면, 대한상사중재원은 상사매매 이외에 건설, 운송, 대리점, 용역, 대행, 보험·금융, 임대차, 합작투자, 근로, 기술도입, 광고, 지적재산권 분야의 분쟁해결에 ADR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중재협회는 소비자분쟁, 연방기관 분쟁, 건강보호 분쟁 및 집단클레임 등에 ADR을 이용하고 있는 점이 대한상사중재원의 ADR이용분야와 차이가 있다.

다섯째, ADR교육에 있어서 미국중재협회는 도서관 및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훈련과 개발, 중립적 제3자 훈련, 그리고 미국의 최대산업 및 서비스회사, 조합, 정부기관 및 법률회사에 대한 교육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전국 대부분의 주요도시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대한상사중재원은 내부직원 교육, 사법연수생 및 군법무관 실무 수습교육, 중소기업에 대한 설명회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중재협회는 중립적 제3자인 중재인 및 알선인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점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교육 프로그램과 차이가 있다.

Ⅳ. 한국 및 미국의 상사분쟁해결규칙

1.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분쟁해결규칙

(1) 표준중재조항

각국의 상설중재기관에서는 중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중재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들이 중재계약을 체결할 때에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중재조항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권고하는 표준중재조항은 다음과 같다.[30] 즉 국내거래시 중재조항으로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그리고 국제거래시 중재조항으로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 및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30) 대한상사중재원, 『상사분쟁과 중재절차 해설』, 2000, pp.9-10.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라는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신뢰성분쟁조정규칙

대한상사중재원은 신뢰성분쟁조정규칙을 제정하여 기계공제사업단체(기계공제조합)의 신뢰성보장공제에 가입된 사건에 대한 신뢰성분쟁조정을 2001년 4월1일자로 시행하고 있다. 신뢰성분쟁이란 "부품·소재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신뢰성 인증을 받은 부품, 소재로 인하여 그 부품·소재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생산된 제품을 사용한 자가 그 부품· 소재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신뢰성보장사업자, 피보험자, 지정인증기관, 지정평가기관 혹은 그밖의 이해관계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의미한다.

신뢰성분쟁 조정의 범위는 제조물의 품질관련 분쟁, 제조물의 회수비용, 제조물 배상책임, 기대이익의 청구 등으로 나눌 수 있다.[31] 신뢰성분쟁조정규칙은 총 1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정신청, 조정인, 조정절차, 조정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3) 중재규칙

대한상사중재원이 관리하는 상사중재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이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 제정한 중재규칙[32]이 적용된다. 이 규칙은 총 6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칙, 당사자의 합의, 중재의 신청, 중재인의

31) 대한상사중재원 , 『조정제도』, 2001, p.47.

32)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은 1966년 10월13일 제정된 후, 1989년11월16일. 1993년 12월14일 , 1996년 8월5일 , 2000년 4월27일 각각 개정되었다.

선정, 심리절차, 특별조항, 판정, 신속절차, 중재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중재규칙의 목적에 관하여 제1조는 "이 규칙은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법에 의하여 상사중재를 공정, 신속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규칙의 주요 규정내용은 후술하는 한국과 미국의 상사분쟁해결규칙 비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2. 미국중재협회의 상사분쟁해결규칙

(1) 표준상사분쟁해결조항

(가) 표준중재조항

상사중재는 미국중재협회 상사중재규칙에 따라 미국중재협회가 관리한다. 상사분쟁의 당사자들은 그들의 계약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장래 발생하는 분쟁의 중재에 대비할 수 있다:[33]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관련하여 발생하는 논쟁이나 클레임 또는 위반은 미국중재협회 상사중재규칙에 의하여 미국중재협회가 관리하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되며, 그리고 중재인(들)이 내린 판정에 대한 재판이 그의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기될 수 있다." (Any controversy or claim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contract, 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settled by arbitration administered by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under its Commercial

33)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http://www.adr.org/rules/commercial/AAA235-0900.htm, p.3.

Arbitration Rules, and judgment on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may be entered in any court having jurisdiction thereof.)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분쟁은 다음과 같은 조항을 이용함으로써 중재에 부탁할 수 있다 : "아래 서명한 우리 당사자들은 다음논쟁 : (간단하게 기술)을 미국중재협회의 상사중재규칙에 의하여 미국중재협회가 관리하는 중재에 부탁하기로 합의한다. 우리는 위의 논쟁이(1인)(3인)중재인(들)에 부탁되는 것을 추가 합의한다. 우리는 이러한 합의와 규칙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 우리가 중재인(들)이 내린 판정에 따르고 이행할 것, 그리고 관할권이 있는 법원의 재판이 판정에 관하여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을 추가 합의한다." (We, the undersigned parties, hereby agree to submit to arbitration administered by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under its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the following controversy:(describe briefly). We further agree that the above controversy be submitted to one(three)arbitrator(s). We further agree that we will faithfully observe this agreement and the rules, that we will abide by and perform any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and that a judgment of any court having jurisdiction may be entered on the award.)

(나) 표준알선조항

상사알선은 미국중재협회 상사알선규칙에 따라 미국중재협회가 관리한다. 상사분쟁의 당사자들이 그들의 계약분쟁 화해절차의 일부로서 알선을 채택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표준중재조항과 함께 그들의 계약에 다음과 같은 알선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34] : "분쟁이 이 계약으

로부터 발생하거나 관련하는 경우 또는 계약의 위반이 있는 경우, 그리고 분쟁이 협상을 통해 화해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들은 중재, 소송 또는 기타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기 전에 우선 미국중재협회의 상사알선규칙에 의하여 미국중재협회가 관리하는 알선에 의하여 분쟁을 화해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기로 합의한다." (If a dispute arises out of or relate to this contract, or the breach thereof, and if the dispute cannot be settled through negotiation, the parties agree first to try in good faith to settle the dispute by mediation administered by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under its Commercial Mediation Rules before resorting to arbitration, litigation, or some other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당사자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알선인을 이용하기를 원할 경우, 그들은 다음과 같은 알선부탁서를 체결할 수 있다 : "당사자들은 미국중재협회의 상사알선규칙에 의하여 미국중재협회가 관리하는 알선에 다음과 같은 분쟁을 부탁한다. (조항은 또한 알선인의 자격, 지급방법, 회의장소 및 당사자들의 기타 관심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The parties hereby submit the following dispute to mediation administered by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under its Commercial Mediation Rules. (The clause may also provide for the qualifications of the mediator(s),method of payment locale of meetings, and other item of concern to the parties.)

34) Ibid., p.4.

(2) 상사알선규칙

AL국중재협회가 관리하는 상사알선에는 미국중재협회의 상사알선규칙(Commercial Mediation Rules)이 적용되는데, 이 규칙의 주요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5]

① 당사자들이 약정에 의하여 또는 그들의 계약에, 미국중재협회의 후원하에 현존하거나 장래의 분쟁의 알선 또는 중재를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그들은 분쟁부탁일 현재 개정되고 유효한 이 규칙을 그들의 협정의 일부로 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제1조 당사자들의 합의).

② 당사자들은 적절한 신청요금과 함께 이 규칙에 의거 알선부탁서 또는 서면 알선신청서를 미국중재협회에 제출함으로써 알선을 개시할 수 있다(제2조 알선의 개시).

③ 알선부탁서 접수시, 미국중재협회는 직무수행 자격있는 알선인을 선정한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또는 미국중재협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단일 알선인이 선정된다. 당사자들이 알선인을 지명하거나 알선인 선정방법을 명시한 경우, 그 지명 또는 방법에 따른다(제4조 알선인 선정).

④ 모든 당사자들의 서면승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알선결과에 재정적 또는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분쟁의 알선인으로서 직무 수행을 해서는 안된다. 예기되는 알선인은 선정을 수락하기 전에 편견의 추정을 일으키거나 또는 당사자들과 신속한 회합을 방해하기 쉬운 상황을 고지하여야 한다(제5조 알선인의 자격).

⑤ 최초 예정된 알선 개회 적어도 10일 이전에 각당사자는 해결되

35) Ibid., pp.5-7.

기를 요구하는 문제들에 관한 그의 입장을 설명하는 요약서를 알선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알선인의 재량으로 이러한 요약서는 당사자들에 의하여 상호 교환될 수 있다(제9조 분쟁중인 문제의 동일증명).

⑥ 알선인은 당사자들에게 화해를 강요할 권한이 없지만 그들을 도와서 그들의 분쟁이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도록 시도한다. 알선인은 당사자들과 합동 또는 분리 회합을 행하고 화해를 위하여 구두 또는 서면 권고를 할 권한이 있다. 알선인은 그의 판단으로 추가 알선노력이 당사자들간 분쟁 해결에 기여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알선을 종결할 권한이 주어진다(제10조 알선인의 권한).

그밖에 이 규칙에는 알선신청, 알선인의 보궐, 당사자의 대리, 알선의 일자·시간 및 장소, 알선회의 비공개, 정보의 비밀성, 무속기록, 알선의 종결, 미국중재협회 또는 알선인의 책임면제, 상사알선규칙의 해석 및 적용, 알선비용, 관리요금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상사중재규칙

미국중재협회가 관리하는 상사중재에는 미국중재협회의 상사중재규칙(Commercial Arbitration Rules)이 적용되는데, 이 규칙은 총5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36]

이 규칙 적용에 관한 당사자들의 합의에 관하여 제1조는 "당사자들은 그들이 미국중재협회의 상사중재규칙에 의한 미국중재협회의 중재 또는 특수한 규칙을 명시함이 없이 미국중재협회에의한 국내상사분쟁의 중재를 규정하고 있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 규칙을 그들의 중재합의의 일부로 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 규칙 및 그들의 개

36) Ibid., pp.7-18.

정은 중재신청서 또는 중재부탁 합의서가 미국중재협회에 의하여 접수되는 시기에 유효한 형태로 적용되어야 한다. 당사자들은 서면으로 이 규칙에 정한 절차들을 변경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이 규칙의 주요규정 내용은 후술하는 한국과 미국의 상사분쟁해결규칙 비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4) 신속절차

미국중재협회의 신속절차(Expedited Procedures)는 당사자 또는 미국중재협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한, 신청 또는 반대신청 금액이 이자 및 중재요금과 비용을 제외하고 7만5천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사건에 적용된다. 또한 당사자들은 이 규칙을 대규모 사건에 적용할 것을 합의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절차는 금전적 신청이 아닌 사건 또는 2인 이상 당사자들이 관련되는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제1조).[37]

그밖에 이 규칙의 주요규정 내용은 후술하는 한국과 미국의 상사분쟁해결규칙 비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5) 대규모 복합 상사분쟁을 위한 선택적 절차

미국중재협회의 대규모 복합 상사분쟁을 위한 선택적 절차(Optional Procedures for Large, Complex Commercial Disputes)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당사자의 신청 또는 반대신청 금액이 신청된 이자, 중재요금 및 비용을 제외하고 적어도 1백만달러 이고, 그리고

37) Ibid., pp.19-20.

① 모든 당사자들이 그들의 분쟁 해결에 이 절차를 적용하기로 선택하였거나 또는 ② 관할권 있는 법원이나 정부기관이 분쟁을 이 절차에 의거하여 미국중재협회에서 해결되어야 함을 결정하였을 경우에 상사중재규칙에 의하여 미국중재협회가 관리하는 모든 사건들에 적용된다(제1조).

그밖에 이 절차의 주요규정 내용으로 ① 높은 자격이 있고 훈련된 중립적 제3자들의 명부(제2조), ② 전화회의에 의해 진행될 수 있는 당사자들과 중재인들간의 강제적 예비심리(제4조), ③ 선서증언을 포함하는 발표요구 수속을 명령하고 통제하기 위한 광범위한 중재인의 권한(제5조)등이 포함되어 있다.[38]

(6) 긴급보호처분을 위한 선택적 규칙

미국중재협회 긴급보호처분을 위한 선택적 규칙(Optional Rules for Emergency Measures of Protection)은 당사자들이 특별합의에 의하거나 또는 중재조항에서 긴급보호처분을 위하여 이 규칙을 채택한 경우에 적용된다. 패널의 구성전에 긴급구제가 필요한 당사자는 구하고 있는 구제의 성질 및 이러한 구제가 긴급을 근거로 요구되는 이유들을 서면으로 미국중재협회 및 모든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이 규칙의 적용에는 당사자가 이러한 구제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제1조).

그밖에 이 규칙의 주요규정 내용으로 ① 미국중재협회의 특별 긴급중재인 패널로부터 단일 긴급중재인 선정(제2조), ② 구제를 부여하고 그에 대한 이유를 진술하는 임시적 판정(제4조), ③ 구제를 구하는 당

38) Ibid., pp.20-22.

사자의 적절한 담보의 제공(제6조)등을 포함하고 있다.[39]

3. 한국과 미국의 상사분쟁해결규칙 비교

미국중재협회의 상사분쟁해결규칙들 가운데 2000년 9월1일 개정 발효된 상사중재규칙 및 신속절차와 대한상사중재원의 2000년 4월27일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 개정된 중재규칙을 각 조항별로 비교 고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관할 및 관리회의

(가) 관할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에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반면, 미국중재협회 상사중재규칙 제 8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중재인은 중재합의의 존재, 범위 또는 효력에 관하여 이의를 포함하는 그 자신의 관할에 대하여 판정할 권한을 가진다. ② 중재인은 중재조항이 일부를 형성하는 계약의 존재 또는 효력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중재조항은 계약의 다른조건들과 독립된 합의로서 취급된다. 계약이 무효라는 중재인의 결정은 단지 그 이유만으로 중재조항을 무효로 하지 않는다. ③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이나 반대신청에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중재인의 관할 또는 신청이나 반대신청의 중재 적합성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야 한다. 중재인은 예비문제 또는 최종판정의 일부로서 이러한 이의에 관하여 판정할 수 있다. "

39) Ibid., pp.22-23.

(나) 관리회의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에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반면, 미국중재협회 상사중재규칙 제10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어느 당사자의 요청시 또는 미국중재협회의 직권으로 미국중재협회는 당사자들 또는 그들의 대리인들과 개인적으로 또는 전화로 관리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그 회의는 중재인 선정, 분쟁의 가능한 알선, 정보의 가능한 교환, 심리 예정표 및 기타 관리문제와 같은 문제들을 다룰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위하여 관리요금은 없다."

(2) 중재인

(가) 중재인의 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제23조에 중재인의 수를 중재합의에서 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사무국이 1인 또는 3인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미국중재협회 상사중재규칙 제17조에 중재인 수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미국중재협회가 그의 재량으로 3인 중재인이 선정되도록 지시하지 않는한 1인 중재인에 의해 심리되고 결정되지만, 당사자들이 그들의 신청서나 답변서에서 3인의 중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중재인과의 통신: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에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반면, 미국중재협회 상사중재규칙 제20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당사자 및 당사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중립적 중재인 또는 중립적 중재인 후보자와 중재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통신을 하지 못한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중재인이 그렇게 지시하지 않는 한, 당사자들로부터 중립적 중재인에게 통신은 중재인에게 송달을 위하여 미국중재협회에 발송되어야 한다. ② 당사자들 또는 중

재인들은 일단 패널이 구성되면 당사자 및 당사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과 중재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통신하지 못한다는 것에 또한 합의할 수 있다."

(다) 중재인의 보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제26조제2항에 중재인이 결원이 되었을 경우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당사자가 신 중재인에게 종전의 심리결과를 진술하여 신 중재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절차를 속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미국중재협회 상사중재규칙 제 21조제2항에 심리 개시후 중립적 중재인들의 한 패널이 결원인 경우에, 나머지 중재인 또는 중재인들은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논쟁의 심리 및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심리

(가) 예비심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에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반면, 미국중재협회 상사중재규칙 제22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당사자의 요청시 또는 중재인이나 미국중재협회의 재량으로, 중재인은 당사자들 또는 그들의 대리인들과의 예비심리를 실행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정할 수 있다. 예비심리는 중재인의 재량으로 전화로 진행될 수 있다. 최초 예비심리에 대하여 사건서비스 요금은 없다. ② 예비심리중에 당사자들과 중재인은 문제점과 신청취지의 명백히 하는 것, 심리예정표 및 기타 예비적 문제들을 포함하는 사건의 향후 진행을 토의하여야 한다."

(나) 정보의 교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에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반면, 미국중재협회 상사중재규칙 제23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당사자의 요청시 또는 중재인의 재량으로 중재의 신속성에 일치하여, 중재인은 서류 및 기타 정보의 제작, 그리고 소환될 증인의 신분증명을 지시할 수있다. ② 심리 이전 적어도 5영업일에 당사자들은 그들이 심리에 제출할 예정인 모든 증거서류들의 사본을 교환하여야 한다. ③ 중재인은 정보의 교환에 관한 분쟁들을 해결할 권한이 주어진다."

(다) 선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에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반면, 미국중재협회 상사중재규칙 제27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최초 심리를 진행하기 전에 중재인 각각 직무선서를 할 수 있으며, 법률이 요구하는 경우 그렇게 하여야 한다. 중재인은 적당한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하여 관리되는 선서하에 증인이 증언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리고 법률이 요구하거나 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그렇게 하여야 한다."

(라) 선서진술서에 의한 증거 및 서류와 기타증거의 심리후 제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제42조에 선서진술서에 의한 증거에 관하여 규정이 없는 반면, 미국중재협회 상사중재규칙 제34조제1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중재인을 선언 또는 선서진술서에 의한 증인의 증거를 접수하고 검토할 수 있지만, 중재인이 그것의 승인에 대한 이의의 검토후 그것을 권리가 있다고 간주하는 만큼의 비중만을 그것에 주어야 한다."

(마) 임시적 처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제42조에 사법당국에 신청한 임시적 처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반면, 미국중재협회 상사중재규칙 제36조제3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사법당국에 신청한 임시적 처분을 위한 요청은 중재합의 또는 중재할 권리와 포기와 상반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바) 통지의 송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에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반면, 미국중재협회 상사중재규칙 제41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이 규칙에 의한 중재의 개시나 계속을 위하여, 중재와 관련된 소송을 위하여, 또는 이 규칙에 의하여 내려진 판정에 대한 재판의 참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적당한 서류, 통지 또는 소환장은 중재가 개최될 국가내 또는 밖에서 최종 알려진 주소에 있는 당사자 또는 그의 대리인 앞으로 보내진 우편에 의하거나 또는 인편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 에게 송달될 수 있으며, 다만 분쟁에 관하여 청취되기 위한 합리적 기회가 당사자에게 부여되거나 되었어야 한다. ② 미국중재협회, 중재인 및 당사자들은 또한 이 규칙에 의하여 요구되는 통지를 보내기 위해 야간배달 또는 팩시밀리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당사자들과 중재인이 합의하는 경우, 통지는 E-mail 또는 기타 통신수단으로 송달될 수 있다. ③ 미국중재협회 또는 중재인이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당사자가 미국중재협회 또는 중재인에게 제출한 서류는 동시에 중재의 상대방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4) 판정

(가) 판정의 형식: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제49조제1항에 중재판

정은 서면으로 작성되고 판정이유를 가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미국중재협회 상사중재규칙 제44조제2항에 당사자들이 중재인 선정이전에 서면으로 이유가 기재된 판정을 요구하거나 또는 중재인이 이유가 기재된 판정이 적절하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중재인은 이유가 기재된 판정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정의 범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제52조에 임시적, 중간적 또는 부분적 판정, 그리고 이자 및 변호사 보수의 판정에 관한 규정이 없는 반면, 미국중재협회 상사중재규칙 제45조제2항 및 제4항에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최종 판정에 추가해서 중재인은 임시적, 중간적 또는 부분적 선긋기, 명령 및 판정을 포함하는 기타 결정을 할 수 있다. 임시적, 중간적 또는 부분적 판정의 중재인은 요금, 경비 그리고 중재인의 적당하다고 결정하는 판정에 관련된 수당을 부과하고 할당할 수 있다(제45조제2항). ② 중재인의 판정에는 중재인이 적당하다고 간주하는 소정일자로부터 소정이율의 이자, 그리고 모든 당사자들이 그러한 판정을 요구하거나 또는 법률이나 그들의 중재합의에 의하여 권한이 주어지는 경우 변호사 보수의 판정을 포함할 수 있다(제45조제2항)."

(다) 당사자들에게 판정문 송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제55조에 전자적 서비스에 의한 판정문 송부에 관한 규정이 없는 반면, 미국중재협회 상사중재규칙 제47조에 당사자들은 전자적 서비스에 의한 판정문의 송부를 판정문의 통지 및 송부로서 인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정의 정정: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제54조에 당사자가 판정문의 오류를 정정하도록 중재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반면, 미국중재협회 상사중재규칙 제48조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판정문의 송부후 20일내에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통지시에, 판정문에서 서기의, 인쇄상의 또는 계산상의 오류를 정정하도록 미국중재협회를 통해 중재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중재인은 이미 결정한 신청의 시비곡직을 다시 결정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 상대방들은 요구에 답변하기 위하여 10일이 주어진다. 중재인은 미국중재협회에 의하여 요구와 그에 답변을 중재인에게 송부후 20일내에 요구를 처리하여야 한다."

(5) 사법절차 및 책임면제

(가) 사법절차를 위한 서류의 양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에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반면, 미국중재협회 상사중재규칙 제49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미국중재협회는 당사자 일방의 서면 요청시, 중재에 관련되는 사법절차에서 요구될 수 있는 미국중재협회 소유의 증명된 서류 사본들을 당사자의 비용으로 그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나) 법원에 신청 및 책임의 면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에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반면, 미국중재협회 상사중재규칙 제49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중재의 내용에 관련하여 당사자 일방에 의한 사법절차는 그 당사자의 중재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② 이 규칙에 의한 절차에서 미국중재협회 또는 중재인은 중재에 관련한 사

법절차에서 필요한 당사자가 아니다. ③ 이 규칙에 의한 중재의 당사자들은 중재판정에 대한 재판이 관할권을 가지는 연방 또는 주법원에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④ 미국중재협회 또는 중 재인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진행된 중재와 관련하여 행위 또는 태만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다."

(6) 중재비용

(가) 관리요금: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제62조에 관리요금의 납부연기 또는 감액에 관한 규정이 없는 반면, 미국중재협회 상사중재규칙 제51조에 미국중재협회는 당사자측에 극도로 곤궁한 경우, 관리요금의 납부연기 또는 감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중립적 중재인의 수당: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제64조에 신속절차에 의해 관리되는 사건의 중립 중재인의 수당에 관한 규정이 없는 반면, 미국중재협회 상사중재규칙 제53조 제1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신청금액 1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신속절차에 의하여 관리되는 사건들의 중립적 제3자로서 선정된 국내 상사중재인 패널의 회원들은 최초 일자의 직무에 대하여 관습적으로 수당없이 수행한다. 그 이후 중재인들은 여기에 정해진 바와 같이 수당을 받는다."

(7) 신속절차

(가) 적용범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제56조에 신속절차는 당사

자들이 이 절차에 따르기로 별도의 합의가 있는 중재사건 또는 신청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의 국내중재의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미국중재협회 신속절차 제1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신속절차는 신청 또는 반대신청 금액이 이자 및 중재요금과 비용을 제외하고 7만 5천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사건에 적용된다. 또한 당사자들은 이 규칙을 대규모 사건에 적용할 것을 합의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절차는 금전적 신청이 아닌 사건 또는 2인 이상 당사자들이 관련되는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 답변연장의 제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에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반면, 미국중재협회 신속절차 제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보통이 아닌 상황을 제외하고, 미국중재협회 또는 중재인은 중재를 위한 신청 또는 반대신청에 답변하기 위하여 1회에 한하여 7일의 기간 연장을 당사자 일방에게 부여할 수 있다. "

(다) 신청 또는 반대신청의 변경: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제56조에 신속절차가 적용되는 2천만원 이하인 국내중재의 경우 기준일 이후의 신청금액의 증액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미국중재협회 신속절차 제3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신청 또는 반대신청의 상대방의 합의시 또는 중재인의 승인시 금액이 증대되거나, 또는 새롭거나 다른 클레임이나 반대클레임이 추가될 수 있다. 그러나 중재인이 선정된 후에, 새롭거나 다른 클레임은 중재인이 승인없이 제기될 수 없다. 금액이 증대된 신청 또는 반대신청이 7만5천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모든 당사자들과 중재인이 신속절차에 의하여 그 사건이 계속 진행도리 수 있기를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사건은 정규절

차에 의하여 관리된다."

(라) 통지의 송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제58조제1항에 사무국은 심리의 일시와 장소를 심리개시 3일전에 전화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미국중재협회 신속절차 제4조에 당사자들은 전화통지를 인수해야 하고, 미국중재협회에 의한 전화통지는 뒤이어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하는데,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도 통지가 사실상 전화로 행해졌다면 절차는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중재인의 선정 및 가격: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제57조에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사무국이 중재인 명부 중에서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미국중재협회 신속절차 제5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미국중재협회는 1인 중재인이 선정되어야 할 그의 패널로부터 뽑은 5인의 추천 중재인들의 동일한 명단을 각각 당사자에게 동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들은 이 명단으로부터 1인 중재인에 합의해서 그들의 합의서를 미국중재협회에 통지하도록 독려된다. 당사자들이 1인 중재인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각 당사자는 명단으로부터 2인 이름을 삭제하여 미국중재협회가 당사자들에게 우편 발송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미국중재협회는 추가 명단의 송부없이 패널의 기타 회원들로부터 선정할 수 있다. ③ 당사자들은 미국중재협회에 의하여 중재인 선정의 통지가 주어 지며, 중재인은 상사중재규칙 제19조에 명시된 이유로 자격 상실을 당한다. 당사자 들은 선정된 중재인에 대한 이의를 7일내에 미국중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의는 이유가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나 당사자들

에 대한 사본과 함께 미국중재협회에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바) 증거서류의 교환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에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반면, 미국중재협회 신속절차 제6조에 심리이전 적어도 2영업일에 당사자들은 그들이 심리에서 제출하고자 하는 모든 증거서류들의 사본을 교환하여야 하며, 중재인은 증거서류 교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서류에 의한 절차 진행: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에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반면, 미국중재협회 신속절차 제7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의 신청금액이 이자 및 중재비용을 제외하고 1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기타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구두심리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구두심리가 필요하다고 중재인이 결정하지 않는 한, 분쟁은 서류 제출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중재인은 서류 제출을 위한 공정하고 형평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아) 심리일자, 시간 및 장소: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제58조제1항에 중재판정부는 심리의 일시와 장소를 결정하며, 사무국이 이를 심리개시 3일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미국중재협회 신속절차 제8조에 관리회의는 없으며, 구두심리가 개최될 경우, 중재인은 중재인 선정 확인 후 30일 내에 개최예정인 심리의 일자, 시간 및 장소를 정해야 하며, 미국중재협회는 심리일자 사전에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심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제58조제2항에 심리는 1회로 종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중재판정부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리를 재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서기로 하여금 심리내용을 생략한 조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미국중재협회 신속절차 제9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일반적으로 심리는 1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각 당사자는 그의 증거를 제출하고 그이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동등한 기회를 가진다. 중재인은 심리의 순서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리고 심리 후 2일내에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나타난 상당한 이유를 위하여 중재인은 심리의 최초일자후 7 영업일내에 추가 심리를 예정할 수 있다. ② 일반적으로 속기록은 작성하지 않는다. 속기록을 희망하는 당사자는 상사중재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속기사를 준비할 수 있다."

(차) 판정기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제59조제1항에 중재판정부는 심리 종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미국중재협회 신속절차 제10조에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심리 종결일로부터, 또는 구두심리가 포기된 경우에는 미국중재협회가 중재인에게 최종진술서와 증거를 송부한 날로부터 14일내에 판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V. 결 론

미국중재협회의 역사, 사명 및 비영리적 지위는 소송대체적 분쟁해결 직업에 있어서 유일한 것이며, 또한 미국중재협회가 법인, 조합 및 단체와 그들의 종업원, 고객 및 동업자들에게 비용 효과적이고 유형적 가치를 제공하는 것은 협회의 자원인 중재인 명부, 규칙, 관리, 교육 및 훈련 서비스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미국중재협회는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수한 국면을 개선하는 것과 국제문제, 건강보호, 집단클레임, 전자상거래와 같은 분쟁해결에 있어 중요한 새로운 영역에 깊게 관련하는 일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미국중재협회는 다양한 분야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ADR제도 및 관련 규칙과 절차의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미국의 중재기관과 상사분쟁해결규칙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중재기관과 ADR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효과적인 사건관리이다. 미국중재협회는 협회가 제공하는 사건관리 서비스가 그들의 차별화에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한 규모로 상사사건에 대한 사건관리를 집중적으로 행하고 있다. 효과적인 사건관리를 위해서는 시기적절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중재 또는 알선이 매끄럽게 진행되기 위하여 심리절차를 통해 사건의 과정에 대한 예정과 감시를 촉진하여야 한다.

둘째, 교육 훈련의 강화이다. 미국중재협회 임무의 핵심요소인 교육훈련은 3개 그룹 즉 미국중재협회 직원, 중립적 제3자, 그리고 변호사 및 사법부 구성원과 같은 분쟁해결절차에 관련된 외부 개업변호사들

에 대해 실시해오고 있다. 또한 인터넷이나 CD-ROM에 의한 온라인 훈련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의 교육은 내부직원 교육, 사법연수생 및 군법무관 수습교육, 중소기업에 대한 중재제도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향후 교육 훈련을 확대하여 중재인 및 정부, 기업, 경제단체 등 중재관련기관에 대하여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온라인 ADR의 개발이다. 미국중재협회는 일정한 형태의 분쟁을 위한 전자적 사건관리에 관하여 조사를 하고 있다. 온라인 ADR시스템은 궁극적으로 분쟁 및 입증서류가 전자적으로 제출되고, 전자적으로 선정된 중재인과 대면회의 대신에 비디오회의를 하고, 그리고 안전한 인터넷 서버를 통해 요금 및 분쟁화해 자금을 송금하는 것이다. 반면에 대한상사중재원은 2000년에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중재원 홈페이지상에서 알선 및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사이버 알선 및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향후 사이버 중재시스템 구축을 위해 조사연구를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전자상거래 분쟁 관련 ADR제도의 확립이다. 미국중재협회는 1999년에 웹도메인 이름 및 주소 관련 분쟁해결규칙 작성에 지원을 하였으며, 인터넷 B 2 B 및 B 2 C 거래에 3억 7천만 달러 이상 관련되는 300개 이상의 기술사건들을 취급하였다.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은 2000년에 전국경제인연합회 주관 전자상거래 분쟁 해결 및 예방에 관한 논의에 참가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향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분쟁의 해결을 위한 ADR절차 및 규칙 제정 그리고 관련 전문가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전문분야별로 분쟁해결규칙의 다양화이다. 미국중재협회는

전문분야별로 각각 다양한 분쟁해결규칙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반면에 대한상사중재원은 2000년 1월1일 개정된 중재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중재규칙을 개정하였고, 그리고 건설중재사건이 급증하고 복잡 다양화됨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와 건설중재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중재관리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전문분야별 중재규칙을 제정하고, 또한 조속한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조정규칙의 제정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목영준, 『상사중재법론』, 박영사, 2000.

이순우, 『상사중재법론』, 법경사, 1998.

장문철,『현대중재법의 이해』, 세창출판사, 2000.

정기인, 『상사중재법론』, 무역경영사, 1992.

대한상사중재원, 『상사분쟁과 중재절차 해설』, 2000.

_____, 『중재』, 2002. 봄 제303호, 2002. 3.

_____, 중재법, 1999. 12. 31개정.

_____, 중재규칙, 2000. 4. 27 대법원 승인.

_____, 『조정제도』, 2001.

대한중재인협회, 『상사중재제도 해설 및 중재인의 역할』, 2000.

_____, 『상사중재론』, 2002.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2000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nnual Report,* 2001.

_____, *Dispute Resolution Journal*, 2001.

_____, *Currents-The Newsletter of Dispute Resolution Law and Practice*, 2001.

_____,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Including Mediation and Arbitration Rules), As amended and effective on September 1, 2000.

Bennett Steven C., *Arbitration: Essential Concepts,* ALM Publishing, 2001.

Born, Grary.,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ransnational Publishers, 2001.

Dauer, Edward A.,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Law and Practice,* Juris Publishing, 2000.

Nolan-Haley Jacqueline M.,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West Publishing Co., 1999.

UNCTAD International Trade Centre, *Arbitration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2001.

中村達也, 國際商事仲裁入門, 中央經濟社, 2001

http://www.kcab.or.kr

http://www.arb. org

ABSTRACT

A Study on Comparison of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in Korea and U.S.A.

Kang-Bin Lee

Every year, many million of business transactions take place. Ocassionally, disagreements develop over these business transactions. Many of these disputes are resolved by mediation, arbitration and out-of-court settlement options.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AAA) helps resolve a wide range of disputes through mediation, arbitration, elections and other out-of-court settlement procedures. The AAA offers a broad range of dispute resolution services to business executives, attorneys, individuals, trade associations, unions, management, consumers, families, communities, and all level of governments. The 198,491 cases composed of the 194,303 arbitration cases and the 4,188 mediation cases, were filed with the AAA in 2000. These case filings represent a full range of matters, including commercial finance, construction, labor and employment, environmental, health care, insurance, real state, securities, and technology disputes.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KCAB) does more than render arbitration services. It helps facilitate settlements and guarantee implementation thereof between trading partners at home and abroad involving disputes related to such areas as the sale of commodities, construction, joint venture agreements, technical assistance, agency agreements, and maritime transport. The 643 cases composed of the the 197 arbitration cases and the 446 mediation cases, were filed with the KCAB in 2001.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AAA and the KCAB regarding the number and the area of mediation and arbitration case filings, the breath of service offerings, the scope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d the education and training.

In order to apply to the proceedings of the commercial mediation and arbitration, the AAA has the Commercial Mediation Rules,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the Expedited Procedures, the Optional Procedures for Large, Complex Commercial Dispute, and the Optional Rules for Emergency Measures of Protection as amended and effective on September 1, 2000.

In order to apply to the proceedings of commercial arbitration, the KCAB has the Arbitration Rules as amended by the Supreme Court on April 27, 2000, which have been changed to incorporate the revisions of the

Arbitration Act that went into effect on December 31, 1999.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AAA's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and the KCAB's Arbitration Rules regarding the clauses of jurisdiction and administrative conference, number of arbitrators, communication with arbitrator, vacancies, preliminary hearing, exchange of information, oaths, evidence by affidavit and posthearing filing of documents or others, interim measures, serving of notice, form of award, scope of award, delivery of award to parties, modification of award, release of liability, administrative fees, neutral arbitrator's compensation, and expedited procedures.

In conclusion, for the vitalization of KCAB and its ADR system, the following measures should be taken : the effective case management, the enhance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the development of on-line ADR, the establishment of ADR system of electronic commerce disputes, and the variety of dispute resolution rules in each expert field.

Key words : commercial arbitration, ADR, AAA, KCAB, arbitration rules